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 토 보 고

〈 내항 정기 여객선 및 도선에 교통카드 정책 등
적용 근거 신설 〉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36)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220493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내항 정기 여객선 및 도선에 교통카드 정책 등 적용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2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220493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Ⅲ. 검토의견

1. 내항 정기 여객선 및 도선에 교통카드 정책 등 적용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수상대중교통(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에 대해 교통카드 전국호환 및 데이터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② (생략)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u>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 ----- ----- ----- ----- ----- ----- ----- -----수상대중교통 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의무) - ----- -----

현행	개정안
의 전국호환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u>해상여객운송사업자</u>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u>유·도선사업자</u>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 -----

현행	개정안
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략)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 ----- ----- -----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 ----- ----- -----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2조제2호1)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도시철도·철도·내항 정기 여객선·도선을 말함.

여객선(「해운법」)과 도선(「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차이

- (여객선) 수상이나 수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
- (도선) 내수면·하구·만, 육지-도서 또는 도서-도서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²⁾

그런데 현행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선(2020년 4월 개정) 및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도선(2021년 1월 개정)³⁾의 경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는 달리 법 제4조의2에 따라 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2) 대법원(2017.11.23. 선고2017두46271) :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수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수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제로 함 (자료 : 국토교통부)

3) 대중교통수단에 내항 정기여객선 포함 시행일 2020.10.8., 도선 포함 시행일 2021.1.5.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참고 1 참조).

따라서, 현재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에는 국가 등의 책무(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조), 대중교통기본계획(제5조, 제6조), 지방대중교통계획(제7조)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8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반영(제9조)에 관한 내용만 적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항목 중 다음 표와 같이 현행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및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내용과, 법 제12조의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내용을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의2에 따른 수상대중교통(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 추가 적용 범위 >

현행법 조항	주요 내용	개정안 내용
제10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의 협의 절차 추가
제10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 역단위 시행계획(전국호환 지역계획) 수립 (시장 또는 군수)	현행법 동일
제10조의4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 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 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의 협의 절차 추가

현행법 조항	주요 내용	개정안 내용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의무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 의무 (대중교통운영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유·도선사업자 추가
제10조의6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전국호환교통카드 설치·운영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현행법 동일
제10조의7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	현행법 동일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교통카드데이터 수집·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의 협의 절차 추가
	대중교통운영자, 조합, 연합회,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교통카드데이터 제출 요청 근거 (국토교통부장관)	해운단체, 유·도 선안전협회 추가
제10조의9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가능	현행법 동일
제10조의10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의 협의 절차 추가
제10조의11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작성·고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과의 협의 절차 추가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현행법 동일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내항 정기 여객선의 경우 2020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항로단절 방지 등 수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운임이 육상교통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육상교통과 연계성이 약하여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연안⁴⁾ 여객선 환승할인 시범 서비스 및 체계구축’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임⁵⁾.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중교통법」상 전국호환 교통카드⁶⁾ 계획 수립 및 설치 등 교통카드 정책 관련 조항의 적용과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4)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5) 「연안여객선 환승할인 시범 서비스 및 체계 구축(안)」

□ 사업 개요

- (목적)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을 통해 국민의 여객선 이용부담 완화와 연안교통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KTX, 고속버스 등 육상교통 이용 후 여객선 탑승자에 대한 운임 할인, 교통카드 활용 환승할인 체계 구축 등
 - ❶ (환승운임 할인) KTX 이용 후 여객선 탑승자*의 여객선 환승운임을 국비로 시범지원(목포, 여수, 포항 등 KTX 이용 가능 3개 지역)
 - * 여객선 이용 후 KTX 탑승자의 환승할인 운임은 현재 운영체계 상 실제 KTX로의 환승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시범사업 추진 시 지원 불가
 - ** 레츠코레일 등 신원이 확인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KTX 이용한 여객선 탑승객(섬주민 제외)에 한해 여객선 운임의 30%(최대 5천원)에서 당일 1회 할인
 - ❷ (환승할인 체계구축) 철도, 버스 등 육상교통 이용 시스템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동 정산 및 할인, 바이오인증 등 간편신분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 ('25년) ISP 용역, 관계기관 협의 → ('26~'27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8년~) 운영

□ 소요 예산

- '25년 20억원, '26년 45억원, '27년 45억원 등 총 110억원
-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 부처안으로 신규 5억원(환승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비)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자료 : 해양수산부

- 6) 내항 정기 여객선은 승선 시 신분확인 등을 거치고 있으나 승선절차 간소화와 육상교통과 연계성 강화와 환승할인 적용을 위해 육상교통과 호환가능한 교통카드 도입 검토 중

재정지원의 적용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수상대중교통⁷⁾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개정안을 통해 향후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 등 수상대중교통과 육상대중교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며, 이를 이용하는 대중의 복리와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해운조합에서는 버스나 지하철과는 달리 여객선은 사전 예매를 필요로 하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 이용객 등이 존재하는바, 즉각적인 교통수단 간 이동을 필요로 하는 환승정책 적용 어려움 및 단체와 개인 이용객 간 환승 혜택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에도 결제 단말기 등 교통카드 시스템 외에도 밀입국 등 방지 차원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7) 「대중교통법」에서는 여객선과 도선과 관련해서는 제5조제1항에서 ‘수상대중교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축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조합 및 여객선사와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음은 조문별로 개정안의 내용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음.

첫째, 현행법 제10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의3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⁸⁾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 제10조의4에서는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략)

「전국호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법 제10조의2제2항)」

1. 이용실태·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2009~2013)”은 2008년 12월(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98호),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2009~2013)”은 2010년 5월(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44호) 수립된 바 있으며⁹⁾, 2007년부터 전국호환 표준기술 개발, 장비설치 지원 등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이 추진되어 2014년 6월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가 정식발매된 바 있음¹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62개 시·군 중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교통카드 사업자의 인프라 보유지역(참고 2 참조)은 158개 지역으로, 일부 인구가 매우 적은 군을 제외¹¹⁾하고는 전국적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전국호환 계획에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기본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바 계획 수립 이후 수정이나 변경, 재수립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는 설명임.

10) 후불교통카드 형식으로도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칩이 삽입되어 이용되고 있음.

11) 전남 진도군, 경북 청송군·영양군·봉화군은 단말기 미설치로 전국호환교통카드 사용 불가(인구가 적어 교통카드 인프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이 교통카드 판매수입보다 높게 발생)

“전국호환 특정부분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내항 정기 여객선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선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을 포함하는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을 총괄하여 수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의 소관 부처의 장인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10조의5에서는 ①도시철도운영자,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④ 철도사업자, ⑤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법 제10조의6에서는 관련 장비 설치·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관련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의7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러한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 인증 관련 업무를 하

도록 하고 있음.

안 제10조의5에서는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①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유·도선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그런데, 「대중교통법」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여객선은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한정됨(법 제2조제2호라목).

개정안에서 말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는 「해운법」 제3조¹²⁾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 여객

12)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해운법」 제4조제1항¹³⁾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통카드 단말기 등 장비를 설치·운영 의무 대상을 「대중교통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유·도선사업자를 교통카드 단말기 등 장비를 설치·운영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도선'(법 제2조제2호마목)을 운영하는 사업자¹⁴⁾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선사업은 규모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

13) 「해운법」

제4조(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나뉘는데¹⁵⁾, 신고사업의 경우 ①5톤미만 ②승객정원 13인 미만 ③ 2해리 미만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카드 단말기 등의 설치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로 보이므로 면허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셋째, 현행법 제10조의8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법 제10조의10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의11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¹⁶⁾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①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면허·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으로 한다.

16) 현재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은 고시되어 있지 않음.

경우(안 제10조의8제1항), ②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안 제10조제10제1항), ③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안 제10조의11제1항)에는,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은 현재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을 포함한 교통카드데이터를 총괄하여 수집·관리하되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데이터는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운영자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을 통해서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주관 부처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체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의무 단계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할 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와 안 제10조의11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는 경우에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 상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 내용 >

현행법 조항	주요 내용	개정안 내용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제1항	교통카드데이터 수집·관리의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 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추가
제10조의10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제출 및 제공을 위한 교통카드데 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 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추가
제10조의11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제출·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교통카드 데이터관리지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행정안전 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추가

넷째, 현행법 제10조의8제2항에서는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¹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안 제10조의8제2항에서는 「해운법」 제40조에 따른 해운단체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유·도선안전협회에도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10조의8제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할 수 있는 조합 및 연합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조직인 「해운법」 제40조¹⁸⁾에 따른 해운단체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의2¹⁹⁾에 따른 유·도선안전협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섯째, 법 제1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육성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8) 「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의2(유·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

개정안은 안 제4조의2에서 내항 정기 여객선과 도선에도 법 제12조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참고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알뜰교통카드 정책(현재는 K-패스 사업으로 변경됨) 등이 지상대중교통만 혜택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 법 제12조제5호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통칭 K-pass 사업)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의 근거 규정인 법 제10조의

12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여객선과 도선을 K-pass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K-패스 사업의 지원 대상을 수상대중교통까지 확대하는 것은 수상대중교통에 대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제도가 정착된 이후 예산 여건,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여섯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어 수상대중교통에도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및 관련 용역을 거쳐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안 제10조의5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 등에게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대중교통운영자 등이 교통카드 요금

결제·정산에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등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법 제10조의7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상대중교통에 지상대중교통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 등 관련 장비가 바로 설치·운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이 충분한 기간인지, 조문 별로 별도 시행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국토교통부)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동의함.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은 2020년 「대중교통법」 편입 이후에도 항로단절 방지 등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상교통과 연계성이 약하여 생기는 불편을 해소코자 ‘육상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할인’ 사업을 검토중에 있는바, 개정안에 동의함.

또한,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을 수상대중교통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선이나 도선의 교통요금을 함께 지원 해주거나, 법 제10조의2도 개정하여 여객선 및 도선을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한편, 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대중교통법 제2조(정의)제2호 “대중교통수단”에 ‘도선’만 해당되므로 ‘유선’은 제외되어야 하며, “도선사업”에는 규모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나뉘는데, 신고사업의 경우 ①5톤미만 ②승객정원 13인 미만 ③ 2해리 미만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어 설치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 보이므로 면허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한국해운조합)

버스나 지하철과는 달리 여객선은 사전 예매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즉각적인 교통수단 간 이동을 필요로 하는 환승정책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여객선이 만석일 경우 환승을 기대했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약 기반의 여객선과 비예약 기반의 다른 대중교통 간 운영 정책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장 발권 및 여행사를 통한 단체 사전 결제 시 교통카드 환승 정책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단체와 개인 이용객 간의 환승 혜택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향후 시스템 구축(밀입국 등 방지 차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므로, 결제단말기 등 시스템 외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방안 등을 조합 및 여객선사와 선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대중교통법」 제1조 ~ 제9조

구분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중교통”, 2. “대중교통수단”, 3. “대중교통시설”, 4. “대중교통운전자”, 5. “간선급행버스체계”, 6. “교통카드”, 7. “교통카드데이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참고2

교통카드 인프라 사업자별 현황

연번	회사명	정산여부	교통카드 브랜드	교통 인프라 보유지역
1	(주)이동의즐거움	O	cashbee	경기, 인천, 강원, 전남(일부)
2	(주)DGB유페이	O	Onepass	대구, 경북(일부)
3	(주)마이비	O	cashbee	강원(원주), 부산, 울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4	(주)티머니	O	T-money	서울, 세종, 제주, 전남(일부), 경남(일부), 경북(일부)
5	(주)한페이시스	O	한페이카드	광주
6	하나은행	X	신(新)한꿈이카드	대전
7	하이플러스카드(주)	O	hipass+카드	-
8	한국도로공사	O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전국 고속도로
9	한국철도공사	O	레일플러스(R+)	수도권 광역철도, 전국 간선철도

* 하나은행은 티머니,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를 통해 정산 대행

자료 : 국토교통부